

건축학과 전공 배정 지침

제정 2017. 10. 17.

1.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과 배정 규정에 의하여 2016학년도부터 건축학과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정원 외 입학생 포함)의 전공(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배정대상

가. 건축학과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4개 학기 이수 후 예외 없이 전공(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배정을 신청해야 한다.

나. 배정을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 수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총 65학점이상 이수
- ② 통합과정 공통 전공 필수과목의 8과목 이상 이수
- ③ 교양과목 중 아래 과목을 이수
 - 수학 및 연습1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1
 - 수학 및 연습2 또는 고급 수학 및 연습2
 - 공학수학1
 - 물리학1(또는 고급물리학1), 물리학실험1(4)
- ④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환경안전 교육을 이수 (환경안전교육은 2017학년부터 시행)

다. 4개 학기이수 후에도 특별한 사유(군입대, 질병휴학 등) 없이 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나.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후순위로 하여 배정한다.

3. 배정시기

학과 전공 배정은 정규과정 매 학기말 종강 이후에 실시하며 그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4. 배정신청 방법

가. 2항의 가. 조건을 충족한 전공 배정 대상 학생들은 미리 공지되는 학과 전공 배정 신청기간 동안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과 전공 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전공배정 신청 요건이 만족되었으나 신청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배정 연기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정연기 사유의 적절성(군입대, 질병휴학 등)을 학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연기를 승인한다. 단, 배정연기가 불승인된 경우 배정신청을 연기할 수 없다.

5. 전공배정원칙

가. 원칙적으로 해당학기 배정신청자 총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공학전공과 건축학전공 진입의 비율이 1:1이 되도록 신청자의 사정 성적순에 따라 희망대로 배정한다.

- 나. 한쪽 전공의 신청자가 총 신청자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정 성적순으로 해당 전공에 초과배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한 전공의 배정인원은 총 신청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6. 성적 사정원칙

- 가. 공통전공필수과목 11개 과목에 대한 총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신청자가 공통전공필수 11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하지 않은 공통전공필수과목의 성적을 0점으로 하여 11개 과목에 대한 총 학점을 기준으로한다.
- 다. 공통 전공필수과목의 총 학점이 동일할 경우 1) 공통 전공필수과목을 더 많이 수강한 자, 2) 교양 및 전공 선택을 포함한 전체 성적이 더 우수한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배정하며, 위의 규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 학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배정한다.
- 라.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과전공 배정 신청 마감 시까지 교무처에서 인정한 성적만 반영한다.
- 마. 전과(전출) 지원자가 타과에 전공진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축학과 내에서 전공을 임의로 배정한다.
- 바.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7. 전공 재배정

- 가. 상기의 전공배정 절차를 통하여 전공이 결정된 학생들은 1회에 한하여 전공배정 후 가을학기 종강 후 전공 재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나. 신청자의 사정 성적순으로 전공 재배정을 허용하며, 전공별 허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학사위원회 심의 후 변경 승인 한다.
- 다. 성적 사정원칙은 위의 6항을 따른다.

8. 예외 규정

- 가. 학사편입학(군위탁 포함)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 나. 자유전공학부 전공 진입자 및 전과(전입)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 다. 본 학과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 승인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 라. 정원의 입학생중 글로벌인재(외국인)특별전형 및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배정한다.

9. 기타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건축학과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한다.